○ 산업통상자원부령제512호(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령 중 정정)

관보 제20533호(2023. 06. 30.) 에 게재된 산업통상자원부령제512호(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령)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07월 0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규칙' 문구 추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삭제	해당내용 중복으로 삭제
제2조 (다중이용시설의 정기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삭제	해당내용이 윗부분 부칙과 중복되어 삭제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정기검사 주기를 사용시설에 따라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구분 하여 운영하던 것을 모두 1년 주기로 변경하고, 지하실에서 액화 석유가스를 사용하려는 자로서 해당 액화석유가스의 저장능력이 250킬로그램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받는 정기검사를 면제하는 한편, 식품 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해서는 영업장 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이고 액화석유가스의 저장능력이 250킬로그램 미만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정기검사 대상에서 면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영	시행규칙 재개정사유 추가

	업장 면적에 관계 없이 저장능력이 250킬로그램 미만이면 정기검사를 면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